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55:7, 엡4:31~32)”

**재 단 대 한 예 수 교 총회연금재단**

법 인 장 로 회

Pension Found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기 / 가입자회장

제 목 제110회 총회 연금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의 건 (2026년 2월 9일 기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110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지난 2025년 12월에 안내해 드린 현행 연금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안내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기준)

아울러, 기존 "계속납입증명서" 폐지 및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신설에 관한 추가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제110회 총회 이후 즉시 시행이 원칙이나, 수납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신규 확인서 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노회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두 서류를 혼용하여 자격 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 헌법위원회의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과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의 자격확인에 대한 질의(2025.12.26.)」에 따른 해석에 의거하여, "총회연금 계속 납입 영수증"과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내용과 증빙 능력 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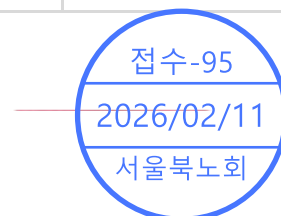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26년 2월 28일부로 "계속납입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는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만 발급 가능하오니, 각 노회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제도	변경 제도	적용 시기/비고
계속납입증명서 폐지 및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신설	계속납입증명서 제출 (3개월 이상 계속납입한 자에게 발급)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제출 (매월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 5만원 중 택일 납입한 자에게 발급)	2026년 2월 적용 /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노회 필수 제출
자격유지금 제도 신설	-	- 가입자격 유지: 매월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월 5만 원) 중 택일 납입 - 납입기간 20년 이상 가입자: 납입 중단 기간 내 자격유지금 납부 면제	2026년 1월 적용 / 자격유지금은 퇴직 시, 반환 가능하도록 논의 중
연금 산정 방식 변경	최종 납입3년 평균에 따라 평균보수월액의 40%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2028년 1월 적용
선납할인 제도 폐지	선납 시 할인 적용	선납 할인 폐지, 할인 없는 일시납은 가능	2025년 12월부터 접수 가능
호봉조정차액금 폐지, 호봉조정수수료 부과	호봉 조정(인상) 시 호봉조정차액금 부과	호봉 조정(인상) 시 차액금 대신 수수료 10만원 부과	2025년 12월부터 접수 가능

끝.

첨부 : [총회연금재단] 제110회 총회 주요 연금제도 변경 안내 (2026년 2월 9일 기준)



# 이 사 장 김 휘 현



시행 연금사업팀-106 (2026.2.10)

우 0312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17층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전화 02-6952-4727~30 전송 02-708-4268 홈페이지 [www.pension.or.kr](http://www.pension.or.kr)

# 제110회 총회 주요 연금제도 변경 안내 (2026년 2월 9일 기준)

□ 제110회 총회에서 목사님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연금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연금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 자격유지금 제도

○ 납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목사님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어려워지고 연금 재정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회 연금재단은 납입이 중단된 가입자분들의 납입 재개를 독려하고, 납입이 중단된 기간에도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유지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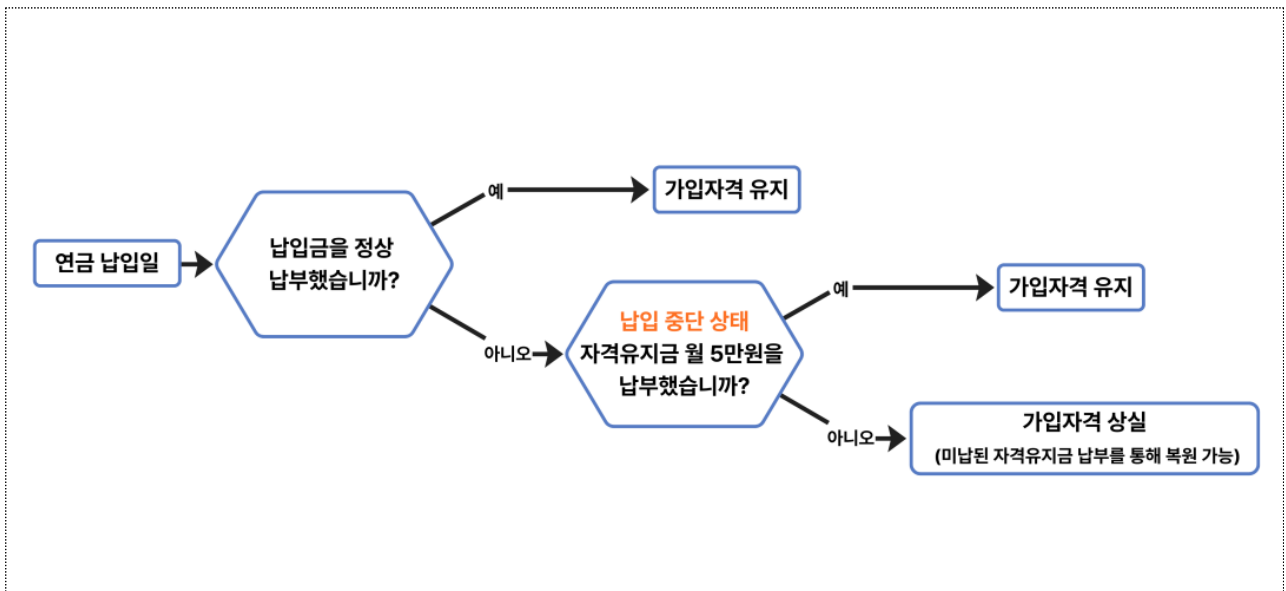


그림 1. 자격유지금 운영방식

## ■ 자격유지금 핵심 사항

- 1) 자격유지 필수조건: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월 5만 원)' 중 하나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자격유지금을 납부해야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발급
  - 기존 '계속납입증명서'는 폐지되고,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을 납부 중인 자에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2026년 2월 9일 기준, 계속납입증명서와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모두 사용 중, 2026년 3월 1일부로 계속납입증명서가 폐지됩니다)
- 3)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노회에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이 중단된 경우에도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 목회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자격유지금을 1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 복원을 위하여 미납된 전체 자격유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5)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는 자격유지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6) 납입금 납입을 재개하시고 12개월이 지나면, 기존의 자격유지금은 납입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자격유지금은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 논의 중)

## 2. 2028년 이후 연금 산정 방식 변경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 1) 20년 이상 납입하고 70세 퇴직 후 적립된 연금액에 따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 2)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납입금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은퇴 년도의 재평가율을 적용한 후 합산한 금액에 적립률 1.1%의 기본적립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적립액은 70세 만기 은퇴 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3) 조기퇴직시(65세부터 69세까지) 기본적립액에 75~95%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4) 만기 은퇴시 납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적립액의 60~80%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5) 다음은 2004년 26호봉으로 가입하여 만기 은퇴까지 20년 납부 한 목회자의 연금산정 예시입니다. (2023년 12월 은퇴, 2023년 재평가율 적용)

표 2.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예시

납입연도	호봉	납입개월	납입금	연납입금 (C*D)	재평가율	재평가 연납입금 (E*F)	적립액 (G*1.1%)
A	B	C	D	E	F	G	H
2004	26	12	359,000	4,308,000	1.914	8,243,358	90,677
2005	27	12	377,000	4,524,000	1.829	8,276,206	91,038
2006	28	12	396,000	4,752,000	1.769	8,407,238	92,480
2007	29	12	417,000	5,004,000	1.708	8,545,331	93,999
2008	30	12	438,000	5,256,000	1.636	8,597,765	94,575
2009	31	12	461,000	5,532,000	1.599	8,845,668	97,302
2010	32	12	485,000	5,820,000	1.571	9,141,474	100,556
2011	33	12	510,000	6,120,000	1.515	9,269,964	101,970
2012	34	12	536,000	6,432,000	1.481	9,523,219	104,755
2013	35	12	563,000	6,756,000	1.446	9,768,500	107,454
2014	36	12	591,000	7,092,000	1.401	9,936,601	109,303
2015	37	12	621,000	7,452,000	1.360	10,136,956	111,507
2016	38	12	653,000	7,836,000	1.316	10,308,258	113,391
2017	39	12	686,000	8,232,000	1.261	10,383,022	114,213
2018	40	12	720,000	8,640,000	1.215	10,498,464	115,483
2019	41	12	756,000	9,072,000	1.174	10,650,528	117,156
2020	42	12	795,000	9,540,000	1.127	10,748,718	118,236
2021	43	12	836,000	10,032,000	1.067	10,704,144	117,746
2022	44	12	878,000	10,536,000	1.000	10,536,000	115,896
2023	45	12	923,000	11,076,000	1.000	11,076,000	121,836
			<b>총납입액</b>	<b>144,012,000</b>		<b>예상연금액</b>	<b>2,129,570</b>

### 3. 선납할인 제도 폐지

- 새로운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에는 이미 재평가율에 따른 할인 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선납의 의미가 없어 해당 제도를 폐지합니다.

#### ■ 선납할인 핵심 사항

- 1) 2025년까지 선납 시, 소정의 이율로 납입금에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선납할인 제도는 폐지됩니다.
- 2) 일시납 자체는 계속 가능합니다.

### 4. 호봉조정 현실화 및 간소화

- 연금액 산정 방식이 실제 납입금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스러웠던 호봉조정차액금은 폐지되고, 호봉조정수수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표 3. 호봉조정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주요 변경 사항
호봉 자동인상	현 호봉에서 1년간(1월~12월) 납입 완료시, 다음 해 1호봉 자동 인상 (현행 유지)
호봉 조정(인상)	사례비 조정으로 인해 호봉을 인상할 경우, 호봉인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존: 호봉조정차액금 납부 후 인상 - 신규: 호봉조정차액금 폐지, 호봉조정 수수료 10만원 부과
호봉 인하	호봉을 인하할 경우, 호봉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호봉 인하 가능 (현행 유지)

## ■ 호봉조정 핵심 사항

- 1) 신규 연금 산정 방식에서는 ‘호봉조정차액금’ 없이 원하는 호봉으로 자유롭게 인상이나 인하가 가능합니다.
- 2) 다만, 호봉을 인상하실 경우 호봉조정수수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3) 연 1회, 가입기간 내 총 3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호봉은 연 단위로만 변경됩니다.

표 4. 자격유지금 관련 연금규정

주요 개정 내용	
제8조(가입자격중단사유)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때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중단된다. 이때에는 제8조의1에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야만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li> <li>2. 시무지 사임으로 휴직할 때</li> <li>3.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li> <li>4. 6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li> </ol>
제8조1(가입자격유지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 등에 해당하여 자격중단이 되면, 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기간동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중단기간 동안 이사회에서 정한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월 5만원)</li> <li>2. 자격유지금은 납부금액이 아니며, 퇴직일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가 재개되면 3항에 따른다.</li> <li>3. 자격유지금의 누적금액은 중단사유가 해소되어 1년 동안 납부를 지속하게 되면, 납부를 재개한 해의 납부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li> </ol>
제10조(가입자격복원)	<p>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중단이유가 소멸되어 연금납입을 재개하면 가입자격이 복원된다. 다만 납입재개 당해 연도에 한하여 납입금을 소급할 수 있다.</p>
제7조(계속납입증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③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납입금을 납입중인 자와 자격유지금을 납부 중인 자에게 발급한다.</li> </ol>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총회연금재단(02-6952-4727~30)으로 연락주시시오.